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0구합245 해임처분취소

원 고 김동일

광주 남구 봉선2동 포스코아파트 102동 201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상훈, 정규련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권정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나양명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이철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갑, 정채웅, 임태호, 박승옥, 김덕은,

김용채, 김정호, 김정희, 김현, 이건영, 임선숙,

장경진, 김도형, 이병주

피 고 광주지방국세청장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소송수행자 김형기, 황영표, 검사 김형진, 공익법무관 박우선

변 론 종 결 2010. 9. 16.

판 결 선 고 2010. 10. 21.

주 문

1.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15.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9. 5. 28. 당시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음

원고는 2009. 5. 28. 07:46경 국세청 내부통신망인 지식관리시스템「나도 한마디」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가. 허위 사실 게재 및 품위손상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 내용이 뚜렷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태광실업 주식회사(이하 '태광실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할 수 있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하였으며(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나. 선동 혐의

2009. 5. 30. 11:06경과 11:07경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지,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라는 댓글을 스스로 게시하여 직원들이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직원들을 선동하였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명예훼손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나, 확인되지 않은 보도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직 국세청 수장을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수준'이라 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기관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사례로까지 선정된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폄훼하여, 국세청과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라. 위협·협박

국세청 게시물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2009. 5. 30. 게시판에 '민변 및 공노조와 협조하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은 게시물관리위원회 책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라는 댓글과 '나의 다른 행동이 일파만파로 퍼져 조직이 위기상황으로 가기 전에...'라는 댓글을 달아 이번 사안에 외부노조와 단체를 개입시키고 이들과 연대하여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언급하는 등 정당한 관리업무를 한 조직에 대하여 위협 및 협박을 하였으며(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마. 이 사건 게시글의 언론 유출 및 방관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외부로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언론에 유출된 이 사건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전문을 2009. 5. 30. 09:49경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다시 인용 게시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 언론에 널리 유포되도록 방관하거나,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7. 8.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5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무겁다는 이유로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해임처분을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고가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과 국세청 직원들을 모독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한 것이 국세청 직원들을 선동하거나 게시물 관리자를 위협·협박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의 언론 유출을 막지 않은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제1 내지 5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행위, 이 사건 게시글 삭제에 대하여 댓글을 작성한 행위 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 국세청장인 한상률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7. 11. 초경 구속되어 사임하자 그 후임으로 같은 달 30. 국세청장에 취임하였고, 취임 후 국세청의 신뢰도 향상을 강조하며 국세청 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 강연활동을 하고, 2008. 6.경 각 청 또는 부서별로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조직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해 왔다.

(2) 한편, 한상률은 2008. 7. 3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졌던 박연차가 운영하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약 4개월에 걸쳐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같은 해 11. 25. 박연차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3) 한상률은 2008. 12. 5. 경주에서 골프모임을, 대구에서 저녁모임을 가졌는데, 골프모임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강석호,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저녁모임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친지, 재대구 포항향우회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의 측근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서는 한상률이 국세청장을 유임받기 위해 대통령의 친인척, 주변인물들에게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4) 또한, 2009. 1.초경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2007. 초경 국세청 차장이었던 한상률이 인사청탁을 위하여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고, 결국 한상률은 위 골프모임 등과 그림 로비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2009. 1. 15.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다.

(5) 한편, 태광실업을 운영하던 박연차가 탈세 등 혐의로 2008. 12. 12. 구속되었고, 검찰은 2009. 5. 6.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이 일자, 국세청이 검찰에 넘겨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중 일부 누락된 자료를 찾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하였으며,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 5. 23.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제1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분 기준은 행정처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글 중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기재 글 중 다음 부분과 같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다 음

[제1부분]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제2부분]

2009년 5월 25일(월요일) 한겨레 5면을 보면
''촛불에 덴 정권 '반전카드' 세무조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촛불을 꺼라' - 충성맹세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은 지난 해 7월 30일 국세청이 태광실업 등 박연차 회장계열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때부터다. --중략--
'정치논리 타는 국세청'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도 정치적 배경의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 실제로 경남 김해에 위치한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은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을 놔두고 일종의 원정 조사에 나선 것이다. --중략--
[제3부분]
자기 자리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하고 결국은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제4부분]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아닌 우리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

따라서, 제1 내지 4부분에 한하여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먼저 제2부분의 경우, 이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6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부분은 원고가 2009. 5. 25.자 한겨레신문의 기사 일부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1, 3, 4부분 역시, 이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각 언론기관은 한상률이 참석한 2008. 12. 5.자 골프모임과 저녁모임 참석자들의 경력과 각 모임의 의미, 그림 로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이례성과 그 배경, 박연차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 해설 등을 보도했던 점, ② 일반인들이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엄격히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언론보도 내용이 뚜렷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 이 부분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이유 없고, 원고가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허위 사실 게재로 인한 품위 손상의 징계사유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제1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제2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제2징계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게시물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된 후, 원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 게시글 관련 기사를 게시하며 댓글을 작성한 것이 직원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인 점,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일 때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어떠한 행위가 설령 선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동 자체가 바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는 등 선동의 대상행위에 따라 선동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2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사유 자체로서는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등'이라고만 하여 원고가 어떠한 행위를 선동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청 직원들로 하여금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및 국세청 조직에 대하여 비판·항의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댓글을 작성한 경위,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 및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가 직원들을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제2징계사유도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제3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전 국세청장인 한상률을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수준'이라 하고,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폄훼하여, 국세청과 국세청 직원들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 기타 일반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가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국가, 사회 또는 특정집단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코너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 인사나 승진,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 등에 대하여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점, ② 원고는 당시 국세청과 전 국세청장들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과 질책을 받음에 따라, 비판의 중심에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책임자들을 비판하고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게시글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상률은 전 국세청장으로서 공적인물에 속하고, 자신에 대한 그림 로비 의혹, 골프 및 저녁 모임 의혹, 세무조사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세청장직을 사임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면이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기 전에 이미 각종 언론기관에 의해 한상률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상세하게 보도된 점, ⑥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국세청이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들의 사퇴와 국세청 수뇌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 점(또한 국세청의 사회공헌활동을 '쇼'라고 표현한 부분도, 대다수 국세청 직원들이 국세청

장의 지시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시한 전임 국세청장이 여론과 언론의 수없는 질타를 받음으로써 그 지시배경에 사회봉사란 순수한 의도 외에 어떠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다소 감정적이고 격한 표현으로 기술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중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게시글에 일부 전 국세청장인 한상률 개인에 대한 비난 및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국세청과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 역시 이유 없다.

(4) 제4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민변 및 공노조와 협조하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은 게시물관리위원회 책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라는 댓글과 '나의 다른 행동이 일파만파로 퍼져 조직이 위기상황으로 가기 전에...'라는 댓글을 달아 외부 노조와 단체를 개입시켜 이들과 연대하여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언급한 것이 정당한 관리업무를 한 조직 내지 관리자에 대한 위협·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협박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 점, 설령 원고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내지 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과 협조하더라도 위 단체들이 불법적인 단체 내지 불법적인 행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닌 이상 이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인 점, 게시물 관리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것 자체를 관리자에 대한 해악 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조직의 위기상황을 언급한 것도 결국 다수의 여론이 국세청에 대하여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국세청 및 직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국세청 조직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다소 강경하게 표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이 국세청 조직 내지 관리자에 대한 위협·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제4징계사유 또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5) 제5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이나 국세청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세청 수뇌부 및 직원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유포되도록 노력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하 _____

판사 서정희 _____

판사 배진호 _____

www.scourt.go.kr
법원
음성출력용바코드

별 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측은하기 그지 없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25일(월요일) 한겨레 5면을 보면
''촛불에 덴 정권 '반전카드' 세무조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촛불을 꺼라' - 충성맹세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쪽을 향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 것은 지난 해 7월 30일 국세청이 태광실업 등 박연차 회장계열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때부터다. --중략--

'정치논리 타는 국세청'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도 정치적 배경의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 실제로 경남 김해에 위치한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은 조직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을 놔두고 일종의 원정 조사에 나선 것이다. --중략--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
자기 자리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하고 결국은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아닌 우리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에서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

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야 하고, 국민앞에 사죄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은 도덕성이 우위에 서야 정말로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조직은 국민들이 우위에 있다고 여겨야 진짜로 우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래 글들을 보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해 억울하다. 검찰에 파견된 직원들을 철수하자.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도덕성을 무기로 우위에 서지 않으면 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이 방법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원인을 제공한 위치에 있었던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공직을 떠나라고 감히 직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 또한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청 수뇌부에서는 고심을 하겠지만 하루 빨리 신속하게 결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 전문을 한 자 한 자 써보는 것으로 글을 마감하려 합니다.

--유서전문 생략--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끝.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정직) · 감봉 · 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 끝.

정본입니다.

2010. 10. 21.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윤 재 필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단말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